고용노동부	보 도 자 료	다시,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6. 15.(수) 12:00 2022. 6. 16.(목) 조간	배포 일시	2022. 6. 15.(수) 12:00
담당 부서	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가사근로자법 시행준비추진단	책임자	과 장 이상임 (044-202-7496)
		담당자	사무관 김철수 (044-202-7503) 사무관 윤문규 (044-202-7051)

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

-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기대
-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신청 접수 시작
- 「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」 참여기관 2차 모집도 시작

□ **고용노동부**(장관 이정식)는 **6월 16일부터 「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**(이하 '가사근로자법')이 **시행**된다고 밝혔다.

* **(주요경과)** ❶'21.5.21 가사근로자법 제정안 국회 통과('21.6.15 공포) → ❷가사근로자법 하위법령 제정 및 시행 준비 → ❸'22.6.16부터 가사근로자법 시행

○ 가사근로자법은 **가사근로자**를 **직접 고용**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**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**하여 **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**하고 **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**시키는 법이다.

□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은 6월 16일부터 **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**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**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**하면 된다.

○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지 않더라도, **고용노동부 누리집**(www.moel.go.kr) **민원마당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**하다.

○ 인증심사는 인증 요건 구비 및 필요서류 제출 정도에 따라 최대 20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, **이용자는 빠르면 6월 말부터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를 이용**할 수 있다.

□ 또한, **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**은 **컨설팅을 지원**받을 수 있다.

○ 「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」 **2차 모집 기간**은 **6월 16일(목)부터 6월 29일(수)까지**이며, 신청 방법은 **「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청서」, 「참여기관 계획서」**와 함께 **사업자등록증** 등을 아래 접수처로 **우편*** 또는 **전자우편****으로 **제출**하면, 이후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이 결정된다. (1차 모집(3.18~3.31) 기 시행)

* (**우편 접수처**)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,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문화개선정책과 (30117)
** (**전자우편 접수처**) cje22014079@korea.kr

○ **작성 서류 서식**은 **고용노동부 누리집**(www.moel.go.kr)*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.

* 고용노동부 누리집 → 뉴스 소식 → 공지사항

□ 이번 법 시행으로 **저출생 고령사회에 대비**하여 **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**되고, **가사서비스의 신뢰도 및 품질**이 높아져 **가사서비스 이용**이 **촉진**될 것으로 예상된다.

○ 또한,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고용되는 **가사근로자**는 **근로기준법, 최저임금법** 등의 **보호**를 받게 되고, **고용보험·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도 적용**되어 실직이나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.

○ 나아가, **가사·돌봄 부담 경감**을 통해 **맞벌이 부부의 경제활동 참여도 확대**될 것으로 전망된다.

○ 가사근로자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**(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)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유급**으로 **고용**하고, 대표자 외에 **관리인력을 고용**하는 등 **인증요건**을 갖춘 법인을 정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한다.

- **(가사근로자 근로조건)**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게는 **최저임금, 사회보험, 퇴직금,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**된다.

- **(가사서비스 이용계약)**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비스 종류·제공 시간·이용요금·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**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**하고, **계약에 근거하여 서비스**가 이루어지도록 한다.

□ 한편, 정부는 가사근로자의 직접 고용 및 사회보험 가입에 따라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**노동비용 상승에 대해 지원**할 계획이다.

○ 먼저,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받은 **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**에 대해 **부가가치세를 면제**한다. 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)

* 「21년 세법개정안」 발표('21.7.26) →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('22.2.15) 및 시행('22.6.16)

○ 다음으로, **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**의 **사회보험료 부담 완화**를 위해 **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80%를 지원**한다.

* 3년 한시 사업으로, 제도 시행('22.6.16) 이후 약 3년 내('24.12.31)까지 지원신청을 한 자에 대해 36개월이 되는 때까지 지원

○ 또한, **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**을 대상으로 **컨설팅을 지원**한다.

- **1차 모집**(3.18~3.31)을 통해 **62개 기관**은 인증 신청 방법, 가사근로자 채용 시 기본 근로조건,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방법, 기타 운영방법 등에 대해 **8주간 컨설팅을 지원**받은 바 있다.

* 상세한 정보는 정부가 개설한 가사근로자법 누리집 '가사랑'(www.gasarang.go.kr)에서 6월 16일부터 확인할 수 있음

○ 정부는 이 밖에도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가 **가사서비스 제공기관**의 **적극적 참여**와 **이용자의 신뢰**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**지속적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**할 계획이다.

□ **권태성 고용지원정책관**은 "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**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가 창출**되고 **고품질의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**될 것"이라며,

○ "**역량 있는 우수한 기관**들이 **적극적**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**인증**을 **신청**하여 **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**되기를 바라며,"

○ "가사서비스 이용자들은 **신뢰할 수 있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**를 이용함으로써 **고품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**받는 동시에, 근로조건을 보장받은 가사근로자를 위한 **'착한 소비'**를 해주시기 바란다."라고 밝혔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1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

□ **(사업개요) 고용노동부 인증**을 받은 **가사서비스 제공기관**을 운영하는 **사업주**와 **소속 가사근로자**가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 중 **고용보험료**와 **국민연금 보험료**의 80%를 **정부에서 지원**하여 **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 완화**

○ **(지원대상)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**(사업주) 및 **소속 가사근로자(아래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함)**

- **(지원요건)** ①월평균보수, ②재산, ③종합소득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

① **(월평균보수)** 월평균보수(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)가 **230만원 미만**

② **(재산)**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**6억원 미만**

* 재산은 「지방세법」 제105조에 따른 토지, 건축물, 주택, 항공기 및 선박을 말함

③ **(종합소득)** 전년도 종합소득이 **3,800만원 미만**

* 종합소득은 「소득세법」 제4조 제1항 1호의 종합소득을 말함

※ 사회보험 가입이력과 관계없이 지원,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, 지원요건은 연도별로 변동 가능

○ **(지원수준)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각각 80%**

○ **(지원기간)** 근로자별 **최대 36개월까지 지원**

* **3년 한시 사업**으로 제도 시행('22. 6. 16.) 이후 약 3년 내('24. 12. 31.)까지 지원신청을 한 자에 대해 36개월이 되는 때까지 지원

○ **(지원방법) 가사서비스 제공기관(사업주)이 해당 월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**를 **완납 → 공단**이 **그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**을 고지

○ **(신청방법) '22. 6. 16.부터 사업주가 온라인**(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: www.4insure.or.kr) 또는 **오프라인**(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중 한 곳을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) 신청 가능

* 제출서류 :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+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(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발급)

참고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

□ **(개요)** 인증제도 활성화를 통한 **가사근로자법 안착 도모**를 **위해 인증요건, 근로조건 등 가사근로자법 주요사항**에 대해 **컨설팅**을 **지원**

○ **(컨설팅 내용) 인증요건, 근로조건 등 가사근로자법 주요사항**

구분	내용
인증요건	▸법인 설립 ▸인력·시설·자본금 요건 ▸직업소개업 겸업시 구분 ▸고충처리수단 ▸손해배상수단 등
근로조건	▸근로계약서 작성 ▸최소근로시간 ▸유급휴일, 연차휴가 등
이용계약	▸표준이용계약 등
제공기관 준수사항	▸정보공개사항 ▸시정명령 및 인증취소 사항 등

○ **(컨설팅 비용) 전액 무료**

○ **(컨설팅 기간)** 기관당 **8주 내외** 소요*

* ❶ 기관 진단 및 인증요건 등 컨설팅(1~6주) → ❷ 사후관리(7~8주)

□ **(참여기관 모집· 컨설팅 실시 일정)** '22년도 총 2차수 모집하여, 100개소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으로, 1차수 컨설팅은 62개소를 지원함

- **2차수 컨설팅**은 6. 16.(목)~6.29.(수) **모집공고**하며, 38**개소**에 대해 **컨설팅 수행기관(전국고용서비스협회)**이 **컨설팅**을 **지원할 예정**

구분	모집공고	선정심의·공고	실시
1차수	3.18.(금)~3.31.(목)	4.1.(금)~4.11.(월)	4.13.(수)~6.13.(월)
2차수	6.16.(목)~6.29.(수)	6.30.(목)~7.11.(월)	7.13.(수)~9.13.(화)

* **모집공고**는 **고용노동부 누리집**(www.moel.go.kr) →뉴스 소식 →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

○ **(참여기관 선정)** 고용노동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기준*에 따라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참여기관을 선정(**2차 : 38개소**)

* 결격사유(임금체불 또는 산업재해 명단 공표) 미해당, 사업장 현황, 컨설팅 참여계획 및 의지 등

□ **(컨설팅 실시)** 컨설팅 효과 제고를 위해 **전문 컨설턴트**가 **참여기관 방문 등** 컨설팅 실시 및 사후관리

참고 3 가사근로자법 카드뉴스 및 엠블럼·홍보안 등

1 카드뉴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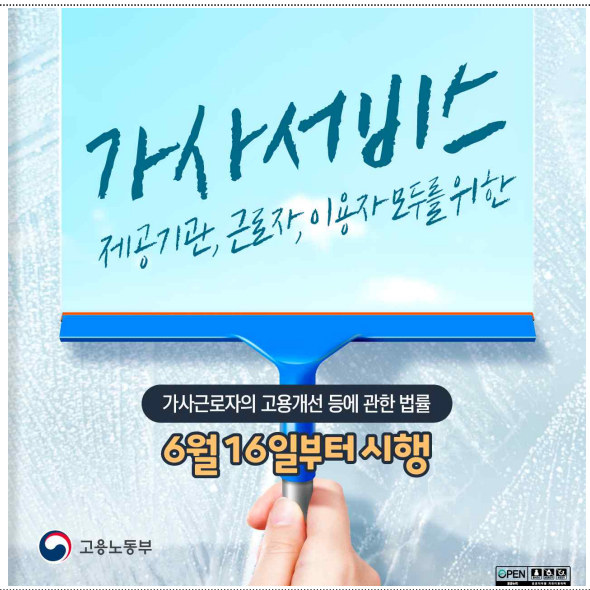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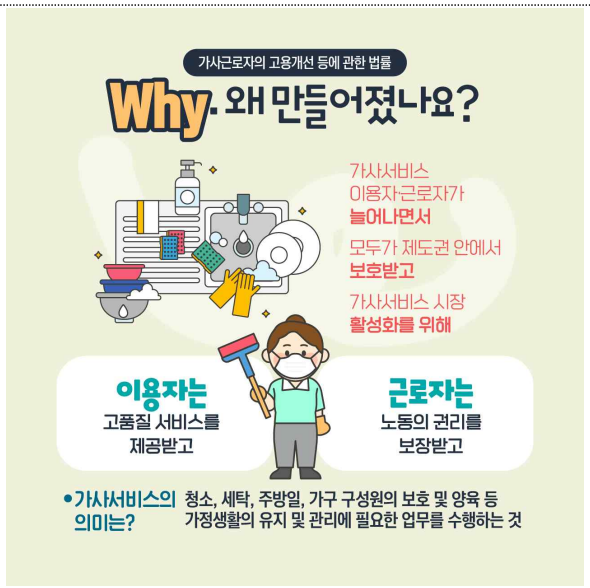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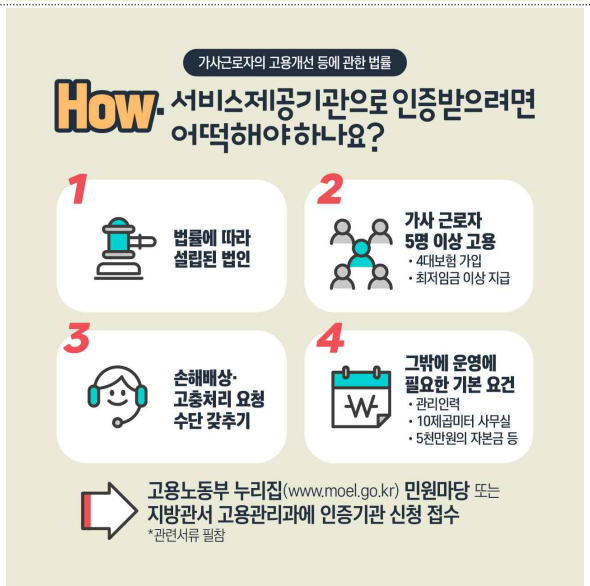

2 엠블럼

정부 인증 가사서비스

정부 인증 가사서비스

3 홍보안

신信난다! 가사
신信난다! 돌봄
정부 인증 가사서비스
가사서비스가 정부 인증 서비스로 새롭게 제공됩니다
고용노동부
정부 인증
가사서비스